

대학원 화학과(화학전공, 유기화학전공, 물리화학전공, 무기화학전공, 분석화학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02.22.

개정 2013.04.09.

개정 2013.04.22.

개정 2014.04.25.

개정 2014.11.0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15학년도 이후 화학과(화학전공, 유기화학전공, 물리화학전공, 무기화학전공, 분석화학전공)(이하 “학과”라고 한다)입학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5학년도 이전의 화학생화학과 및 화학과로 입학한 화학전공, 유기화학전공, 물리화학전공, 무기화학전공, 분석화학전공 학생들에게도 각 조별 제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4항의 논문지도위원회관련은 학과 시행세칙 제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응시절차)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과목)논문제출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화학과 교육과정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기준)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출제위원은 해당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장이 위촉한다.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합격기준)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제출절차)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의 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7)

②(유효기간)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유효기간은 입학 시부터 청구논문심사 접수 기한 내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한다.(신설 2014.11.7)

③(성적표 기준) 2015년 3월 이후 화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입학생의 경우 (외국인 포함) 청구논문심사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4.11.7)

1. TOEIC 550점 이상
2. TOEFL(CBT) 150점 이상
3. TOEFL(iBT) 55점 이상
4. TEPS 455점 이상

④ 또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충남대학교 대학원 규정 중 “대학원 외국인전형 조건부 학생 어학능력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②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 1호 서식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중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

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신설 2013.4.9)(개정 2013.4.22)(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⑤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발표 후 **별지 제 2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를 학과에 제출한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⑥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은 다음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2004년 3월 이후부터 2008년 2월 이전까지의 화학과 및 화학생화학과 박사과정 입학자의 경우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SCI급 논문 2편 이상의 발표(Submitted포함)가 요구된다. 단, 2004년 2월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②2008년 3월 이후 화학생화학과 및 화학과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급 논문 2편(게재승인 포함)이상의 발표가 요구된다.

③2015년 3월 이후 화학과 석사과정 입학생부터 학회발표 1회 또는 논문 1편 이상(Submitted포함)의 발표가 요구된다.(신설 2014.11.7)

④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학술지게재 의무조건에 해당하는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청구논문 접수 시 **별지 제 3호**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2.학술지게재 의무조건에 해당하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별지 제 4호** 서식 ‘**학회 논문 발표 확인서**’ 를 학술대회표지, 목차, 발표논문과 함께 제출한다.(신설 2014.11.7)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장이 회의를 거친 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 및 그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별 적용 학년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각각 입학년도별로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의 경우 2015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6조(논문지도도위원회)의 경우 2008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모두 소급 적용한다. 또한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석사, 박사 각각 입학년도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

석사 or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					논문지도위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지도 교수	소속	교직원 번호	직위	성명	위원 (위원장)

학과주임 (인)

※ 작성요령

1. 대상 :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석-박사학위 과정 학생(단, 학과별시행세칙상 구성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2.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3. 3인 이상의 위원 중 위원장을 1인 임명하여야 함

논문 계획 승인서

소 속 대 학 :
전 공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 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과주임 : (인)

화학과전공 주임교수 귀하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소속대학 및 학과				
	지도교수				
소속 학과 의무 조건	소속학과				
	의무조건				
학술지 게재 목록					
연번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이름	SCI(E) 등재 여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여부
<p>위와 같이 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술지논문게재의무 조건을 이행 하였습니다.</p> <p style="color: red;">※ 본 학술지게재 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 논문접수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논문접수 취소됨 (단,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 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필히 기재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 사항등)가 없을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주임) : (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충남대학교대학원장 귀하</p>					

